



(보건사회부 사회보장국장) 수석

- I. 머릿말
- II. 의료보험제도의 개요
 - 가. 적용범위
 - 나. 보험관리
 - 다. 보험급여
 - 라. 보험재정
 - 마. 기타
- III. 맷는말

1. 머릿말

오늘날의 人間生活에 있어서 醫療問題는 衣食

住 못지 않게 그 比重이 커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社會의 發展에 따라서 醫療問題의 解決을 為한 努力은 國家的인 것으로 되어 소위 先進國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를 為한 制度가 社會化되어 疾病이나 負傷등으로부터 安心하고 日常生活을 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1977年은 우리나라의 社會保障制度에 있어서 새로운 章을 열게되는 划期的인 한 해가 될 것이다. 即 政府는 今年부터 國民에 대한 醫療保障을 擴大하기로 하였으니 그 하나가 生活保護對象者와 一定所得水準以下의 階層에 대한 公的 扶助方式에 의한 醫療保護制度를 지난 1月 1일부터 施行하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一定所得水準以上의 勤勞者 및 地域住民에 대하여는 社會保險方式에 의한 醫療保險制度를 導入하여 오는 7月 1일부터 實施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것이다.

이러한 國民에 대한 醫療保障을 위한 政府의 施策이 可能하게 된 것은 지난 10餘年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에 힘입은 것이며 이는 곧 經濟發展에 따라 積累되는 富를 社會化함으로써 國家의目標인 國民福祉를 極大化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制度의導入이 우리가 處하고 있는 現在의 狀況에 必要한 것인가 또는 그 內容과 方法이 現實에 適合한가 등의 問題는 政策形成過程에서 많은 論證를 거쳐立法化될 것으로서 지난해 12月 23日字 및 今年 3月 12日字로 각각改正公布된 醫療保險法 및 同法施行令이 政策의具體的인 表現이라 하겠다.

그리므로 이와 같은 制度가立法化된 지금에 있어서 政府나 國民은 어떻게 하면 制度의 基本目標인 國民에 대한 醫療保障을 極大化하며 또한 어떻게 하면 새로導入한 制度를 하루속히 우리의 實情에 맞도록 定着化 하느냐에 關心을 가지고 制度를 發展시켜 나가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立案者인政府는制度에關與하는모든國民에게그趣旨를正確히알리고또한그와관계되는國民은그참뜻을理解하게함으로써制度를올바르게發展시켜나아갈수있다고하겠다.

그리하여여기서는制度의내용을說明하고이制度에관여하는여러분들이어떠한惠澤을받게되며또나아가서어떻게利用하여야하는가에관하여보기로하겠다.

2. 醫療保險制度의概要

가. 適用範圍

本醫療保險의適用對象은全體國民으로 하되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員등과같이 다른法律體系에서그들의醫療保障문제를規定하고있는경우를除外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그實施範圍는經濟的·社會的與件에따라서段階적으로擴大하여나아갈수있도록하였다. 即,制度의施行初年度인今年에는單一事業體로서500人以上的勤勞者를使用하는경우나一定工業團地에入住하고있는事業體의경우에는반드시本法에의한醫療保險組合에의한醫療保險事業을實施하도록하였으며그以外의事業體나地域의自營者는任意의으로醫療保險事業을implement할수있도록하고있다.

여기서한가지더말하여야할事項은勤勞者나地域住民의醫療保障은世帶單位로하기로하였다는것이다. 地域住民에있어서는後述하는保險料가世帶員數를基準으로하는定額제이기는하나,勤勞者の경우에는그勤勞者の扶養家族數에관係없이그가醫療保險組合에納付하게되는保險料는그의報酬(賃金)를基準으로하여決定되는것이다.

나. 保険管理

醫療保險을爲한事業의管理主體는國家에

따라여러가지가있으나우리의醫療保險制度에있어서는構成員의自律에의하여運營할수있는組合制度를選擇함으로서스스로의利益을스스로管理運營하도록하는即運營의民主성을最大로確保코자한것이다. 그러한組合은事業體혹은地域社會를單位로하여이루어지기때문에各各의事業體또는地域社會의與件에適合한給與水準을維持하고自律的調整에의한保險財政의彈力性을確保하여安定된運營을期할수있다. 특히事業場組合에있어서는그意思決定機關이나執行機關의構成에있어서勞·使兩側에서同數의人員을選出하도록勞使間의協調를바탕으로運營할수있도록하였으며使用者에게는그가使用하고있는勤勞者的保險料의절반을負擔하게하여經營人으로서의社會的責任을義務化하고同時に勤勞者的醫療保障에관한權益을侵害하는일이없도록하는한편運營에있어서는醫療保險組合을代表하는代表理事가될수있는者를選定할수있는權限을賦與하는동과같이勞使間의힘의均衡을制度화하고자한것이다.

다. 保険給與

保險給與는疾病·負傷·分娩과같이診療行為가要求되는경우의給與와그以外에死亡의경우는葬祭에所要되는費用또는傷病으로因하여生活資金源이斷切되었을경우의生活費에相當하는傷病手當의給與가있다. 疾病·負傷·分娩에대한療養給與나分娩給與는法定給與로서法令이定하는基準에따라반드시給與를하도록規定하고있으나葬祭費또는傷病手當은組合財政이許容하는경우에위의法定給與에附加의으로組合定款이定하는바에따라給與할수있도록規定하고있다.

그리고法定給與인療養給與나分娩給與는診療行為가必要하므로이는組合이市·道의承認을얻어指定하는醫療機關이나組合이開設

運營하는 醫療機關 即 療養取扱機關을 通하여 診療行爲라고 하는 現金이 아닌 現物給與를 할을 原則으로 하고 不得已 한 경우에는 事後에 現金으로 支給할 수 있도록 하였다.

療養取扱機關의 指定은 組合이 市·道의 承認을 얻어 指定하도록 하였으나 그 指定에 있어서는 受惠者인 被保險者나 被扶養者が 利用함에 便利하도록 그 地域의 分布, 專門科目 및 醫療機關의 診療能力등을 考慮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診療에 所要之 費用은 療養取扱機關이 組合에 請求를 하면 이에 관하여 審查를 하여 支給하게 된다. 여기서 組合의 審查의 내용은 療養取扱機關의 診療가 給與基準(이 基準은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도록 되어 있다)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또 保險醫療酬價基準에 의해 算定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檢討하는 것이 主로 되며 나아가서 診療의 內容이 不當하지 아니한가에 관하여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로도 될 수 있다고 하겠다.

診療費用의 負擔은 組合 即, 保險者가 全額을 負擔하는 것이 理想의이라고 하겠으나 그러한 理想의인 制度를 採擇할 수 없는 것은 施行初年 度에 있어서 組合財政의 安定을 確保하는 것이 두엇보다도 큰 문제이며 또한 本人이 一定額을 負擔하도록 하는 것은 受惠者 本人이 醫療機關에 출입 없이 出入하는 것을 防止하고자 하는 데에 큰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診療費用에 대한 本人一部負擔率은 入院·外來別로 區分하여 이를 다시 被保險者 被扶養者에 있어서 서로 다른 率을 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即, 入院의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費用金額의 100分의 30의 範圍內에서, 被扶養者は 100分의 40의 範圍內에서, 그리고 外來의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費用全額의 100分의 40의 範圍內에서, 被扶養者は 100分의 50의 範圍內에서, 각각 組合의 財政 형편에 따라 定하도록 하고 있다.

療養給與나 分娩給與등의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條件은 被保險者の 資格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그 資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給與를 制限할 수도 있으며 또한 資格喪失後에도 給與를 받을 수 있는例外的인 規定을 두고 있다. 即, 被保險者나 被扶養者の 故意의 犯罪行爲에 의하여 疾病·負傷이 蒼起된 경우나 事業上의 災害로 因하여 產業災害補償保險法등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나 补償을 받는 경우,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로부터 療養費를 支給받는 경우 등과 같이 그러한 保險事故에 대하여 补償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2重의 給與를 避하고자 하였으며 特히 資格이 있는 경우에도 療養期間은 6月로 限定하고 있으나 이는 거의 대부분의 疾病이 6個月 정도면 治療될 수 있다는 理由도 있으나 費用의 本人一部負擔制度와 같이 施行初에 있어서의 保險財政의 安定을 考慮한 것으로서 制度가 定着되고 發展함에 따라서 이러한 期限의 制限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被保險者の 경우에 있어서는 1년 以上 被保險者の 資格을 가지고 있던 者로서 療養取扱機關에서 療養中에 資格을喪失한 때에는 비록 資格을喪失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앞서 말한 療養할 수 있는 期間동안 療養給與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1년 以上의 被保險者の 資格을 가지고 있던 者가 資格喪失後 3月以内에 分娩한 때에는 分娩給與나 分娩費를 支給할 수 있도록 했다.

라. 保險財政

組合의 財政은 被保險者로부터 徵收하는 保險料와 國庫로부터 交付되는 負擔金이 收入의 大部分으로 되며 이로써 保險給與에 所要되는 費用과 事務에 必要한 費用에 充當하게 되는 것이다.

保險料는 제 1종 組合인 事業場組合에 있어서는 被保險者の 報酬의 3~8%의 範圍內에서 組合에서 定하도록 하고 제 2종組合인 地域組合에 있어서는 被保險者와 被扶養者數를 基準으로 定

款으로 定하는 定額으로 하도록 하였다.

保險料는 定率制로 하든 定額制로 하든간에 이는 被保險者와 被扶養者の 醫療 即 保險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을 判斷하여 決定하여야 할 問題로서 財政收支의 安定에 焦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1種組合에 있어서는 報酬를 保險料의 算出基礎로 하고 있기 때문에 每月 變하는 報酬額에 保險料率을 그때 그때에 適用하여 計算하여야 하는 不便을 없애므로서 組合事務의 簡素化를 期하기 위하여 한번 결정하면 1年間을 適用할 수 있는 標準報酬制度를 擇하고 있다. 標準報酬制度를 擇하는 또 하나의 理由는 報酬의 上·下限線을 定하므로서 受惠者的 保險料負擔에 比하여 지나친 不均衡을 防止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報酬를 20,000원에서 400,000원까지 30등급으로 나누어 400,000원 以上的 報酬를 받는 경우라도 400,000만원에 대한 保險料를 負擔하도록 定하고 있다.

特히 施行初에 있어서 保險財政의 安定은 醫療保險制度의 健實한 發展에 必要不可缺한 點으로서 이를 위하여 保險料率의 決定은 3~8%의範圍로 하였으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本人負擔率도 30%~50%의範圍로 하고 나아가서 財政의 一時的인 赤字에 대하여는 一時借入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保險財政의 安全瓣으로서의 準備金에서 轉入하여 赤字를 補顛할 수 있는制度의 裝置를 마련하였다.

마. 其 他

(1) 被保險者나 被扶養者 기타 關係者에 대한 被保險者の 資格, 保險料 또는 保險給與에 관한 處分에 不服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異議를 申請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의 裁決을 위하여는 市·道에 各界代表로 構成되는 醫療保險審查委員會를 設置하도록 하였다.

(2) 組合에 대한 指導監督은 組合의 設立, 定款變更, 解散認可등 基本的인 事項에 관하여는 保健社會部長官이 가지고 其他 大部分의 權限은

市·道에 委任하고 있다.

(3) 그밖에 醫療保險制度의 效率의in 實施에 있어서 被保險者, 使用者等에 各種의 義務를 賦與하고 있으나 이들 義務의 履行에 慢慢하다는가 또는 懈怠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罰則을 두고 있다. 그 하나의 例가 使用者에게는 勤勞者가 法에 의하여 被保險者로 되는 것을 妨害하거나 負擔金의 增加를 忌避할 目的으로 勤勞者の 昇給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體刑인 6月以下の 徵役에 處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3. 맷는 말

以上에서 今年부터 實施될 醫療保險制度의 内容을 說明하였으나 問題는 어떻게 하면 이 制度를 하루속히 우리의 現實에 맞도록 定着 發展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가 問題라고 여겼을에서 言及하였듯이 이를 위하여는 政策當局이 繼續 努力を 하여야 함은 두말 할 必要가 없는 바 이지만 이 制度에 관련되는 모든 關係人的 姿勢가 이에 뜻지 않게 重要하다고 할 것이다.

即, 受惠者인 被保險者나 被扶養者는 어느 정도의 不便이 있더라도 이를 참아주어야 하는 同時に 先進國에서 보는 社會保障制度에 의존하려는 習性은 아예 생각지 탈아야 할 것이며, 使用者는 現代的인 經營人으로서 전신으로 自己가 履儲하는 勤勞者를 위한 努力を 함으로써 그 事業이 번창할 수 있다는 點을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特히 醫療人의 경우에는 制度의 趣旨를 보다 더 높은 次元에서 생각하여 個個人의 利益에 굽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社會의으로 信賴받고 尊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制度의 施行에 있어서도 그려하지만 醫療保險의 경우는 全國民이 對象이 되고 있으므로 더욱 그려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모든 關係者が 本制度에 積極的으로 參與하도록 全體國民의 健康生活을 保障하고자 하는 本制度의 브다 被實하고 보다 빠른 現實에의 定着이 可能하다고 할 것이다.